

산부인과 의사가 권유한 자궁절제수술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환자의 발언은 하나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행위 역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KANAGA v. GANETT CO.

24 Med. L. Rptr. 1075(델라웨어지방법원, 뉴카슬카운티, 1995년 10월)

#### 사건개요

1. 이 사건 원고인 Kanaga는 윌밍턴 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여자 산부인과 의사이고, 이 사건피고들 중의 하나인 Kane은 45세의 이 지역 거주 여자인데, Kane은 월경주기가 길어지고 심한 출혈이 있어 1992년 4월 2일 Kanaga의 병원을 방문하였다. Kanaga는 진찰 결과 Kane의 자궁벽에 유섬유종 종양이 돌출하여 자궁경부를 막고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당시 Kanaga는 종양의 지반이 매우 넓게 자리잡고 있다고 보았고, 이 종양이 과다한 출혈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Kane에게 자궁절제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Kane은 자궁절제수술이 너무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하여 망설이면서 보다 충격이 적은 처치방법을 쓸 수 없는지 물었으나 Kanaga는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2. 그러던 어느날 Kane은 상태가 악화되어 근처의 St. Francis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다. 담당의사인 Domingo는 반사경으로 상태를 보고 반지형 핀셋으로 종양을 잡아 비틀어 떼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Domingo는 두 번의 시도끝에 자신이 말한 방법으로 종양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종양이 목부분이 가늘어서 그러한 손쉬운 방법으로 제거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Kane과 Domingo는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가 후에 Kanaga를 의사협회에 제소한 근거가 되었으나, 그 대화내용의 해석은 Kanaga와 Domingo 사이에 엇갈리고 있다. 그 후 Kane은 Kanaga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사무직원이 지난 번에 권고한 자궁절제수술을 받으려면 500불을 예납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Kane은 자신이 이미 종양절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Kanaga에게 자궁절제수술 받을 것처럼 전화로 날짜를 협의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이 사건 피고들 중 하나인 The News Journal Company의 직원인 Harriman양에게 들려주었다.
3. 두 차례의 전화통화 후 Kane과 Harriman은 5월 4일 직접 만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Kane은 첫째로, Kanaga가 받으라고 권유한 자궁절제수술이 불필요한 것이었으며, 둘째로 Kanaga는 오로지 부당하게 돈을 벌 목적으로 그러한 권유를 하였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이 대화 결과 확인되었다. Kane은 5월 11일 뉴카슬지역 의사협회에 서신을 보내 ① 의사 Domingo가 사용한 방법(종양을 비틀어 제거하는 방법)이 과연 산부인과 학계에서 잘 알려지지않은 방법이어서 Kanaga가 이를 모르고 있었는지 ② 의사들의 처치기준에 의하면 유섬유종 종양의 처치법이 오로지 자궁절제수술이라고 되어있는지 등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다. Kane의 서신을 수리한 의사협회는 이 사건을 산하 직업윤리위원회에 넘겨 심리하게 하였고, 동 위원회는 Kanaga에게 그녀가 환자로부터 제소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녀의 반론을 함께 청취하였다.

4. 한편 Harriman 양은 The News Journal 의 편집자와 상의한 결과, 의사협회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려면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기다릴 수는 없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사건을 기사화하였다. 7 월 5 일 The News Journal 의 일요일판에 「여자는 배신감을 느낀다. 수백명의 여자들이 불필요한 자궁절제수술을 권유하는 의사를 제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1 면의 제목 소개란에 게재되고, 이어서 본문에서는 『환자는 배신감을 느낀다』가 헤드라인으로, 그리고 『의사가 제안한 자궁절제수술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A 가 부제로 붙여 그 아래에는 「Kanaga 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하였다. Kane 은 Kanaga 가 환자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인 자신에게 가장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주는 처리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그와 함께 『수술을 대

신하는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임신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여자들에게나 쓸 수 있는 자궁절제수술은 요즘 그 선택시 더욱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1983 년부터 1989 년까지 자궁절제수술을 받는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하였다.

5. 뉴카슬지역 의사협회 산하의 직업윤리위원회는 위 보도가 나간 이후인 8 월 27 일 Kane 에게 여러 전공을 가진 의사들이 충분한 심리를 한 결과임을 전제하면서 「환자 개개인의 사정, 의사가 받은 교육과 경험, 그리고 철학에 따라 똑같은 상황하에서도 의사마다 여러가지의 다른 처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Kanaga 가 권유한 자궁절제수술도 45 세라는 Kane 의 나이를 고려하면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처치방법 중의 하나였다고 본다」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편지에 담아 보냈다.

Harriman 양은 9 월 2 일 『의사협회가 소속 의사의 처치를 두둔한다』는 제목으로 위 심의결과에 관한 기사를 The News Journal 에 게재하였다. Kanaga 는 그 무렵 위 신문의 7 월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ane 과 Harriman, 그리고 News Journal Company 등을 피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별도로 1994 년 다시 92 년 9 월의 기사내용을 문제삼아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두 소송이 병합심리되는 가운데,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이 사건에는 주요사실에 관한 쟁점이 없으므로 바로 법률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 판결요지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첫째로, 문제의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둘째로, 그것이 법이 보호하는 의견의 진술이 아니라 사실의 표현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피고 Kane 의 발언 중 자궁절제수술이 부적절한 것이며 일반적인 의사의 처치기준에는 어긋나는 것이었다는 부분은, 실제로 Kane 의 종양이 충격이 덜하고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이미 제거되었으며, Kanaga 나 의사협회에서도 그 처치에 관하여는 자궁절제수술 이외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의료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므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그것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은 하나의 의견의 진술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3. 또한 Kanaga 가 오로지 돈을 벌 목적으로 자궁절제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하였다는 Kane 의 발언은 분명히 의사인 Kanaga 의 직업인으로서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근거가 될만한 사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기초하여 행해진 위 발언은 의사의 처치행위 선택의 동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 Kane 이 의사협회에 제소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행위는 역시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 판결이유(요약)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첫째로, 문제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둘째로, 그것이 법이 보호하는 의견의 진술이 아니라 사실의 표현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Snavely v. Booth, Del.Super., 176 A. 2d 649, 654, 1935). 어떠한 발언이 ① 상대방이 종사하는 직업이나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그의 신용이나 지위를 해하는 것이거나, ② 상대방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거나, ③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하거나, ④ 여성과의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①항목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2. 피고 Kane 이 한 문제의 발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Kanaga 가 받으라고 권유한 자궁절제수술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것이며, 의사들의 일반적인 처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는 내용과, 둘째로 Kanaga 는 오로지 부당하게 돈을 벌 목적으로 그러한 권유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첫번째 발언은 의사 Domingo 가 자궁절제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서 의외로 쉽게 종양을 제거하였다는 사실 및 그와 관련하여 Domingo 와 나눈 대화를 통하여 얻은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Domingo 는 자신이 Kane 에게 자궁절제수술이 불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 출혈이 없었기 때문이지 다른 의사의 견해가 부당하다는 차원에서 이와 배치되는 의학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물러서고 있고, Kane 이 자신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다른 대화에 대하여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은 Domingo 가 자궁절제수술까지 필요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의사협회에서도 Kane 의 신청을 수리하여 심사한 후 비록회원인 의사 Kanaga 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지만, 그 이외에 여러가지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으며, Kanaga 자신도 실험적인 방법이지만 복강경 수술법을 자궁절제수술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의료에 관한 자식이 없는 Kane 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그것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은 하나의 의견의 진술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3. 마지막으로 Kanaga 는 오로지 부당하게 돈을 벌 목적으로 환자인 Kane 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자궁절제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하였다는 발언은 분명히 의사인 원고 Kanaga 의 직업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Kanaga 는 보험회사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자궁절제수술을 될 수 있으면 시술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자궁절제수술 이외의 처치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병원 직원이 Kane에게 수술을 받기 전에 500 불을 예치하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어찌 되었건 종양은 다른 의사에 의하여 자궁절제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손쉽게 제거되었다. 당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자궁절제수술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Kane의 위 발언도 역시 Kanaga의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나름대로의 있을 수 있는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궁극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Harriman이 Kane의 발언에 약간의 내용을 보태어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의 자유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 기사가 의사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이므로 의사협회 직업윤리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들의 발언과 보도가 정당한 것으로서 보호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들의 약식판결신청은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약식판결신청은 이유없이 이를 기각한다.